

C 법령코너

국제공인시험기관및검사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개정내용

시험인정과 섬유사무관 이완규

02) 509-74 14~6 wklee@ats.go.kr

○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“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운영요령 : 기술표준원고시 제2001-205호”를 본원 고시 제2002-246호(2002.5.4)로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발행 및 배포하고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.”에서“ 인정기관의 장은 품질문서를 작성, 검토, 승인, 발행 및 배포하고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 별도로 품질책임자(부책임자포함)를 지명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1) 고시제목을“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운영요령”에서“ 국제공인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운영요령”으로 개정했습니다.

5) 제15조(평가 및 인정기준) 제1항 6호의 내용중 “ KOLAS인정마크 사용 및 공인기관”을 “ 인정마크 사용과 국제공인 기관”으로 하고 제8호의 내용을“ KSA 0004:1997(분석 시험의 통칙)”에서“ KSA 5725:2001(측정방법 및 측정결과의 정확도)”로 하며, 제2항 제2호를 “ KSA 17020:2000 (검사기관 운영에 대한 일반기준, ISO/IEC 17020:1999)해설서”로 신설한다.

2) 제2조(용어의 정의) 제4호의 내용중“ KOLAS 로고”를“ 국제시험소 인정기구에서 정한 상호 인정마크(이하 ILAC MRA마크라 한다)와 KOLAS로고”로 한다.

3) 제7조(위원회 위원 위촉) 제5항의 “ 4기타 인정기관의 장이 필요한 경우”를 신설한다.

4) 제10조(품질문서의 제정 및 운영) 제3항을 “ 인정기관의 장은 품질문서를 작성, 검토, 승인

6) 제18조(인정신청 및 평가) 제1항 제5호를“ 인력현황”에서“ 인정대상 업무관련 인력현황 및 인력별 관장업무”로 하고 제9호를“ 숙련도 시

험 참가 실적"에서 "숙련도 시험 참가 실적 또는 KSA 17025 5.9항에서 규정한 시험결과와 품질보증실적"으로 한다.

정 인원부족 등 인정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 될 시에는 직권으로 인정불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7) 제18조(인정신청 및 평가)에서 "인정기구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심사결과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평가 결과 시정기간이 6개월 이상 장기간 소요 또는 신청기관의 품질시스템 미구축, 설비 미확보, 직원의 능력 및 적

8) 제29조(인정취소 등) 제1항 제1호의 내용중 " 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공인기관표시를 위한 지침"을 "인정마크를 위사용과 국제공인기관표시를 위한 지침"으로 한다.

※ 담당 : 시험인정과 섬유사무관 이완규 02) 509-7414~6 wklee@ats.go.kr

